2026년도 주택지원사업 신청 관련 안내

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

□ 계약체결 및 참여신청서 작성 ※ 세부 작성방법은 매뉴얼 참고

○ 계약체결 기간(3.18(수)부터 상시) 동안 1·2차, 에너지원, 단독/공동 구분없이 ❶계약체결, ❷참여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진행(자가점검까지 완료)

* 참여신청번호는 참여기업의 "계약진행" 순번대로 부여되고 신청자의 계약 체결여부 문의가 다수 예상되므로, 가급적 빨리(3.18부터) 계약체결 진행 요망

- **계약체결** 시 신축여부, 설치주소, 설치장소 특이사항(공동주택 개별세대, 땅콩주택, 도서지역), 소유주 **정보** 등을 **정확하게 체크** 및 **입력** 필요
-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진행상태 "신청대기" 건으로 변경되고, 참여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진행

* 참여신청서에 오타, 오체크,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사업취소되므로 작성 후 반드시 재검토 필요

□ 참여신청서 제출

○ "신청대기" 건의 참여신청서를 접수 기간 내 제출 완료하면 신청순번이 부여되고 진행상태가 "접수완료"로 변경

- 1차(선착순) 접수기간에는 비태양광 선착순으로 신청서 제출버튼 클릭(접수완료)
- 2차(선착순) 접수기간에는 태양광(단독·공동) 선착순으로 신청서 제출버튼 클릭(접수완료)

* 1,2차(선착순) 기간 동안 참여기업, 신청인 모두 선착순 제출 가능

○ 선착순 접수 시, 참여기업은 각 "신청대기" 건을 참여신청번호 순서대로 제출 가능 (단, 신청인의 사업취소 요청 등 부득이한 경우, 건너뛰어 신청은 가능)

-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는 건은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음

○ 제출버튼 클릭 후 대기열페이지에서 뒤로가기 혹은 새로고침 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 요망

* 접수 완료되기 전까지 세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필요

□ 후순위 배정 및 신청서 검토

○ 1,2차 접수 기간 동안 "접수완료"된 건에 대하여 접수당일(4/14(화), 4/15(수))에 일괄적으로 "신청완료" 처리 및 후순위 부여 예정

- 후순위 건은 "신청완료(대기)" 상태로 변경 및 후순위 순번 부여

○ 참여신청서 검토는 "신청완료"된 건에 대해 일괄 검토 시작(4/16(목) 예정)

참고1 '25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재안내

1 **(태양광(단독) 접수방식 변경)** 배분물량을 선착순으로 한 번에 접수

① 선착순 접수 순서대로 전체 신청자 대상 순번 부여(참여기업·신청자)

② 참여기업별 배분물량 8건 우선 선정 처리(공단)

③ 태양광(단독) 예산 한도 만큼 순번대로 신청완료 처리(공단)

<예시> 업체별 배분물량이 1건이고 신청가능 예산이 5건일 때, 아래표와 같이 신청됐을 경우

구분	신청서1	신청서2	신청서3	신청서4	신청서5	신청서6	신청서7
신청업체	A	A	B	A	B	C	C
신청순번	1	2	3	4	5	6	7
선정결과	신청완료	신청완료	신청완료	신청완료	후순위1	신청완료	후순위2

1) 업체별 배분물량을 우선 선정하므로 A, B, C 업체의 신청서1, 3, 6번이 선정처리 됨

2) 이후 접수순번대로 처리하여 신청서2, 4번이 선정되고 신청서5, 7번은 후순위 1, 2번이 됨

2 **(참여기업별 태양광(단독) 상한물량 확대)** 125건 → 200건

3 **(사업연장 불가 및 설치 완료기한 조정)** 사업연장 신청이 불가한 대신 연장기한(30일) 만큼 설치완료기한 연장(ex, 태양광(단독) 60일 → 90일)

4 **(설치확인 관리 강화)** 서류검토부적합 통보 후 14일 이내 미보완 시 사업취소 검토대상으로 분류, 허위서류 지속 제출 시 참여제한* 검토

*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에 관한 규정 [별표3],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한 경우 2년 이상 참여제한 가능

5 **(동일장소 중복지원 기준 완화)**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의거한 '동일한 장소'는 **건축물대장의 고유번호 및 건물ID가 모두 동일한 경우**로 해석 완화

- 고유번호가 동일하나, 건물ID가 다른 경우 각각 지원 가능

6 **(신청자 사업포기 패널티 강화)** 1년 → 2년

- 26년도 사업포기 시, 26년 및 27년 사업 재신청 불가

7 **(산불피해지역 우대)** 『경북·경남·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』에 의거한 피해지역 내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우선 지원

참고2 사업 진행 시 유의사항

□ 사업취소(부적합) CASE

① **(서류보완)** 보완요청 후 **7일 이내 서류 미보완 시 사업 자동취소**(주말, 공휴일 포함)

No.	서류 보완 사항
1	첨부서류 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재제출 해야할 경우
2	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재제출 해야할 경우
3	지자체 검토 시 지방비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할 경우
4	한전고객번호 및 전력사용량 수정해야할 경우
5	단독주택의 경우,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중 한가지 자료만 제출했을 경우
6	주택 공동명의 동의, 토지 사용 동의 등 동의 관련 내용에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* 최초 신청서 제출 시 "공동명의" 또는 "토지 소유자 다름"에 체크했을 경우만 보완 가능

② **(가상계좌)** 사업선정 이후 **7일 이내 자부담 가상계좌 미발급** 및 가상계좌 발급 후 **7일 이내 미입금 시 사업 자동취소**(주말, 공휴일 포함)

③ **(참여신청서)** 신청서 및 제출서류 내용 중 **중요정보의 기재 착오, 미기재, 누락, 오기, 오첨부 등**은 수정 불가하며 **부적합(사업취소) 처리**

No.	(예시) 부적합 처리 사항
1	시스템-서류 간 신청자(기관명), 생년월일(사업자번호)가 불일치
2	**(기축)** 시스템-건축물대장(등기부등본) 간 **도로명주소**가 **불일치** **(신축)** 시스템-건축허가서(건축신고필증) 간 **상세주소**가 **불일치**
3	시스템-계약서 간 총사업비, 보조금, 자부담금, 기타금액 불일치
4	최초 설비내역입력 시, 안내된 조달등록제품이 아닌 설비를 등록한 경우
5	타인 서류 첨부 또는 첨부서류 항목에 맞지 않게 등록(건축물대장에 계약서 등록 등)한 경우
6	공동주택 개별세대에 설치하지만 공동주택 개별세대 설치 체크 안 한 경우
7	신축여부(기축or신축)에 잘못 체크한 경우(기축인데 신축 체크, 신축인데 기축 체크)
8	신청 주택이 공동명의 임에도 공동명의 체크 안 된 경우
9	건축물이 미등기, 위반건축물, 가압류, 무허가 등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

* 모든 기재사항(제출서류, 시스템 입력)은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, 위의 사항 외에도 중요정보 착오 관련 사항은 부적합 처리 예정

□ 설치완료기한 관리 강화 안내

○ 2025년도 주택지원사업부터 **설치완료기한 초과 시** 시스템 내 사업변경, 설치확인 신청 등 사업 진행이 불가한 **"임시정지" 상태로 변경** 및 **사업취소 대상 검토**

- 의견이 있는 경우 설치완료기한 초과일로부터 20일(공휴일 포함) 이내 승인취소 대상 목록 메뉴에서 의견 제출(20일 이내 의견 미제출 시 자동 사업취소)

○ 의견 제출 시 공단 검토 후 사업취소 또는 사업원복을 시스템을 통하여 안내

- **(사업취소)** 특별한 사유가 아닐 시 사업취소되며 "승인취소" 상태로 변경
- **(사업원복)** 의견이 수용될 경우, 설치확인 완료기한을 재부여하며 재부여된 기한을 재초과하는 경우 즉시 사업취소(승인취소) 됨

* 사업취소 시 자부담금은 신청자에게 환급